KOSHA GUIDE C - 18 - 2015

4. 설계 시 고려할 안전·보건 기준

4.1 일반사항

- (1) 공사조건 검토
 - (가) 발주자·설계자·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함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·보건 확보가 가능한 작업환경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한다.
 - (나) 발주자·설계자·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공사의 계획 또는 설계시 안전· 보건 확보를 위하여 고려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.
 - ① 현장 주변의 기존 철도(지상 및 지하), 도로 등 교통환경
 - ② 전기, 통신, 가스, 난방, 상·하수도 등의 지하 매설물과 전기·통신 등의 가공선로 등 지장물 상황
 - ③ 굴착공사와 관련된 지하수 유출여부
 - ④ 인접 건물·구조물·시설물 등 시공중 상호 영향 여부
 - ⑤ 가설구조물 설치 및 건설기계 운용과 관련한 지반지지력, 공간확보 여부
 - ⑥ 현장 내 설비나 장비설치의 장애요인 등에 관한 사항
 - ⑦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굴착공사전「도시 가스사업법」제30조의3에 의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에 관한 사항
- (2) 근로자의 안전·보건을 고려한 설계
- (가) 발주자·설계자·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공사일정 수립 시 안전·보건 대책 수립과 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종·공정 단계별 고려할 유해·위험요인을 표시, 기재 등의 방법으로 설계에 반영한다.
- (나) 발주자·설계자·건설사업관리자는 근로자의 안전·보건 확보와 공사 목적물의 안전 시공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종·공정상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방법에 근거하여 설계에 반영한다.
 - ① 제거(계획 또는 시공법 변경을 통한 유해·위험요인의 제거)
 - ② 차단(유해·위험요인과 근로자와 차단)
 - ③ 격리(유해·위험요인을 근로자로부터 격리, 공종 간 간섭 회피)
 - ④ 방호(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방호조치)
 - ⑤ 보호(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곤란시 근로자에 대한 예방조치)